##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11

발의연월일: 2023. 5. 15.

발 의 자:김성원·김희곤·정우택

최춘식 • 구자근 • 이종배

박대수 · 박수영 · 이주환

최영희 • 태영호 • 김용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 가상 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 2).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6호 중 "지분"을 "가상자산·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①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	
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	
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	
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6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의 주식· <u>지분</u> 또는 자본금	<u>가상자산ㆍ지분</u>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의 명단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7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가.·나.(생략)

<신 설>

8. (생략)

② ~ ⑤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8.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